

의안번호	2212796
의 퇴 인	김상욱 의원
회 답 일	2025.11.18.
추계번호	25C49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2 (직무적합도 검사 의 실시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이하 “직무적합도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적합도 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적합도 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은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의2 (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①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하 “직무적합도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②검사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신설 또는 추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설치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심리검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73개소를 지정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노무,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20,672건의 상담을 진행함
 - *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상담사업 운영실적
 -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24.2.)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전용 플랫폼인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을 지원하고 있음
 - 보육활동보호센터에 고충 상담 신청 시 사안에 따라 유관기관 연계, 전문가 상담,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향후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육교직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상담사업 운영실적

(’24. 12. 31.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진로고민	원아와의 상호작용	업무 관련	동료상사 관계	학부모 관련	경 제 적 인정	개 인 사 관련	심리적성 성격검사	아동학대 예방	기타
건수	20,672	188	1,393	2,520	2,769	637	19	1,281	8,730	1,394	1,741
비율	(100)	(0.9)	(6.7)	(12.2)	(13.4)	(3.1)	(0.1)	(6.2)	(42.2)	(6.7)	(8.4)

자료: 교육부